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2004. 2. 17.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 목 차

제1장 총 칙 .....	1
제1조(목적) .....	1
제2조(적용범위) .....	1
제2장 보호구역(Airside) .....	1
제3조(항공기 이동지역 접근 통제) .....	1
제4조(이동지역의 위치) .....	1
제5조(출입구) .....	2
제6조(이동지역 도로) .....	2
제7조(울타리 및 출입문) .....	2
제8조(격리주기장) .....	3
제9조(경항공기 주기장) .....	4
제10조(출발장 보안검색대) .....	4
제11조(보안검색 완료 지역) .....	5
제3장 여객청사 등의 일반지역(Landside) .....	6
제12조(여객청사에 대한 기본원칙) .....	6
제13조(발권구역) .....	6
제14조(여객청사 전망대) .....	7
제15조(여객 청사 주차) .....	7
제16조(공항 철도역의 위치) .....	7

제17조(여객의 이동) .....	7
제18조(수하물 보관시설) .....	8
제19조(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	9
제20조(화물 및 우편처리 시설) .....	9
제21조(보안 지원 시설) .....	9
제22조(공항 비상운영센터) .....	10
제23조(보안운영센터) .....	11
제24조(귀빈실) .....	12
제25조(관제탑, 변전소, 연료저장소 등 주요 시설) .....	12
제26조(전원) .....	12
제27조(보안등) .....	12
제28조(폐쇄회로 TV) .....	13
부 칙 .....	13

#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 17 3.2.6항 및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경우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일반대중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공항 운영 및 항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 건설 및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공항운영자 또는 공항이외의 지역에서 항공기 승객 탑승수속 시설을 설계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보호구역(Airside)

제3조(항공기 이동지역 접근 통제) ①공항건설자 또는 공항운영자(이하 “공항 건설 또는 운영자”라 한다.)는 항공기 이동지역(이하 “이동지역”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Fence), 접근금지 표시가 부착된 기타 장벽, 센서가 설치된 장벽 시설, 조명, 경보장치, 경비초소 설치 등을 항공기 이동지역 설계에 반영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지하 공동구 배관, 홍수배수로, 하수구, 터널 등 이동지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구조물은 쇠창살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정비 목적 등으로 이들 시설물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입문에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한다.

제4조(이동지역의 위치)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및 항공기 주기장 지역을 일반지역으로부터 분리한다.

②특별한 보안시설을 필요로 하는 화물시설, 정비시설, 급유시설 등은 이동지역 밖에 위치할 수 있다.

제5조(출입구)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여객청사의 일반 개방구역에서 이동지역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보안요원의 감시범위 밖의 출입문은 잠금 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여객청사에서 이동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비상 출구에 출입통제 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항보안통제센터, 종합상황실 등에서 감시 가능
2. 비상시 작동되는 비상 출입문 동작 스위치 또는 개폐손잡이에 비닐 커버를 씌우거나, 깨어질 수 있는 덮개를 장착하여 일반인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
3. 비상시 대피와 평상시 보안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해 방화규정 담당관들과 협의

제6조(이동지역 도로) ①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공항 운영자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원과 차량만 운행토록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외곽 울타리 도로 즉, 공항 울타리 바로 안쪽의 순찰도로는 경비, 순찰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한 차량이 이용한다.

③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이동지역 도로의 어느 곳에서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울타리가 차폐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울타리 및 출입문) 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일반 구역으로, 일반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의 무단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 및 출입통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건물이나, 다른 고정구조물로의 출입 통제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울타리의 일부 인정
2. 울타리는 가능한 한 직선으로 단순하게 설치하되 여객청사와 다른 건물의 보안 경계선과 일직선 유지
3. 울타리는 충분한 높이와 견고성이 있어야 하고, 울타리를 기어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울타리의 일부구간이 안전과 운영 편의를 위해 보안요건을 충족치 않을 경우 감시장비 설치
5. 울타리와 항공기 주기장 간에 충분한 거리 유지
6. 울타리의 밑쪽 끝 부분을 땅에 고정
7. 울타리와 동일한 수준의 출입문 설치
8. 출입문은 밑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9. 이동지역으로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설치할 경우 일반지역으로부터 물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설치
10. 시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출입문 양쪽, 지상 또는 사용될 울타리의 특정구간에 조명시설 설치
11. 울타리에 철조망 같은 오염방지 장치를 울타리 위쪽에 설치
12. 이동지역으로 진입하는 인원 또는 차량에 대한 출입문 통제를 위한 통제소 및 차단기 설치
13. 보안요원이 배치된 출입문에는 차광시설 설치
14. 출입문 통제소와 공항보안통제 부서간 통신수단 및 경보장치 설치

제8조(격리주기장) 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불법방해행위 대상 또는 예상 항공기를 격리 주기에 필요한 격리주기장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항공기 주기장, 건물, 공공지역 및 공항 울타리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
2. 항공기 급유관, 상수도관, 전선, 통신선의 지하 공동시설 위에 설치 금지
3. 폭발물 위협 상황에서 항공기로부터 제거된 화물, 우편물 및 비품에 대한 검색을 고려하여 선정
4. 보안 당국으로부터 격리 주기장의 이상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 수집

제9조(경항공기 주기장)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정기 운송용 항공기와 경항공기 주기장을 분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경 항공기 전용 유도로를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한 정기 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하는 주기장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출발장 보안검색대)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을 진입하기 전에 모든 인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대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가 보안검색대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보안검색요원, 법 집행관(필요시), 보안장비 검색테이블과 수 검색 등에 필요한 공간 확보
2. 검색대에는 최소한 문형금속탐지기 1대, X-ray장치 1대 이상 확보
3. 재 검색, 몸수색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보안검색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 확보
4. 검색대의 넓이는 한번에 한 사람이 통과 가능
5. 검색대는 필요한 경우 신속한 확장 가능
6. 문형금속탐지기는 장비의 성능을 저해할 수 있는 X-ray 또는 금속성 물체로부터 해당 장비제작사의 설치지침서에서 정한 거리 유지
7. 보안검색대가 무단침입을 당했을 경우, 보안검색 완료지역이나 탑승구의 신속한 봉쇄 가능

③보안검색대의 형태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승객들의 동선을 단순화하고 최소한의 보안요원으로 보안검색이 가능토록 보안검색대의 형태, 위치, 수에 관하여 검토 후 설치
2. 보안검색대의 설계나 위치는 보안검색을 통과한 승객과 그렇지 않은 승객 분리용이
3. 보안검색장비 등이 담당자 없을 때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강구

4. 금속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피해야 한다.

가. 전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

나. 천장, 벽, 바닥 등에 전자 회로가 설치된 장소

다. 철문 또는 승강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

라. 스피커로부터 1.2미터 이내의 장소

마. 수하물 카트, 지하철, 중형 트럭 등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

5. X-ray장비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건물의 전기시스템

나. 장비가 타 전원에 의하여도 작동되는지 여부

다. 기존의 전기 회로나 콘센트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라. 온도 조절 가능 여부

④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검색대 인근에 개별 검색, 수 검색, 기타 특별 검색을 위하여 별도의 검색실이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⑤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장비 선택 및 설치 시 보안요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제11조(보안검색 완료 지역)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진입 가능한 모든 접근 지점에 시건 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검색완료지역에 일반지역으로부터 검색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도록 한다.

③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공항시설의 설계 또는 보수할 경우 탑승지역에서 검색완료 된 자와 검색을 받지 않은 자간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한다.

④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검색 완료 지역과 인접한 일반지역의 복도 및 발코니를 이용하여 위험물품이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



⑤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동 회전문 또는 자동회전문 설치를 고려할 경우 소방법을 준수한다.

⑥출발승객과 도착승객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 제3장 일반지역(Landside)

제12조(여객청사 설계·유지에 대한 기본원칙)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가 여객청사를 설계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기본원칙을 고려한다.

1. 승객과 수하물의 동선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한다.
2. 국내선 및 국제선, 환승 및 통과여객, 화물동선은 물리적으로 구분한다.
3. 승객 및 수하물의 동선이 모이는 곳에 보안검색대를 집중배치 하는 등 보안검색대의 수를 최소화한다.
4. 보호구역으로 출입 가능한 출입초소는 최소화한다.
5. 항공기와 보안검색대 사이에 있는 모든 승객 출발지역은 반드시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여객청사 설계시 비 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한다.

③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여객 청사에 폭발물, 인화성 물질, 무기 등의 은닉 장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④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폭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건축 및 폭발물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제13조(발권구역)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항공사 발권구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좌석만을 설치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탑승권 발급전 항공사의 승객 인터뷰,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 및 수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제14조(여객청사 전망대) ①여객청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항운영자는 전망대에서 이동지역으로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며 위험물품을 항공기 주기 지역이나 보안검색 완료지역으로 투척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가 야외 전망대를 설치할 경우 이동지역으로 위험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전망대에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5조(여객 청사 주차)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여객청사 일반 승객용 주차장을 설계할 경우 폭발로 인한 사상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인가 차량이 청사 지역으로부터 최소한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 순찰 차량의 순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③여객청사 앞 도로(이하 “커브사이드”라 한다.)에는 승객을 하기 시키는 동안 만 정차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 개인 차량을 위한 주차 지역은 버스 또는 택시를 위한 주차지역과 구별한다.

④버스와 택시의 주차 위치는 커브사이드를 따라 승객이 탑승 또는 하기 하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고 위협시 승객탑승지역을 볼 수 있는 옥상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에 대한 특별 보안 대책을 수립한다.

제16조(공항 철도역의 위치) 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공항에 철도, 외부 또는 지하 역에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여객 청사로부터 멀리 위치 되도록 하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7조(여객의 이동)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검색대에서부터 항공기 출입문까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승객 이동 선을 설계한다.

1. 출발 탑승동지역으로 연결되는 여러 지역의 모든 출입문은 보안문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자동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문들과 출입구는 출입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일반지역 출발탑승동 및 에어사이드 출입문

나. 출발대기실 출입문

다. 여객탑승교 출입문과 출구

3.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비상출입문은 출입통제를 한다.

4. 출발대기실 칸막이는 천장에 닿도록 하여 그 위로 물건을 넘길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환기 목적 상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식당과 휴게실 지역에 고정된 튼튼한 창이 없다면, 항공기 주기지역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국내선 및 국제선 승객의 동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국제선 출발대기실은 출입국관리지역 또는 세관지역 뒤쪽에 위치한다.

제18조(수하물 보관시설)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수하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폭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폭탄 피해 방지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공항운영자는 수하물을 보관하기 전에 수검색 또는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보안검색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수립한다.

③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일반 물품 보관함을 폭탄 위협 상황시 보관함 수색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④수하물 접수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한 설계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수하물 처리 설비가 있는 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보안 장비 설치가 가능하고, 전원 및 백업 전원 공급, 불법방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⑥수하물 분류시설 위치 및 사양 결정시 공항보안감독관과 협의한다.

⑦일반지역으로부터 이동지역으로 연결되는 수하물 컨베이어시스템을 통한 불법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⑧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에 의하여 오분류 수하물이나 주인없는 수하물이 운송될 때까지 보관하는 시설 및 이에 대한 보안 규정이 있어야한다.

제19조(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①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시설 운영 또는 설계하는 자는 수하물 및 꼬리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②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시설 운영하는 자는 수하물 접수시설이 외부와 연계시켜 사용하는 경우 보안경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여객청사 외의 지역에서 탑승수속 시설 운영 또는 설계하는 자는 많은 대중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화물 및 우편처리 시설)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화물 및 우편처리 시설이 일반지역과 이동지역 경계에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져 있을 경우 화물청사를 통하여 이동지역으로의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화물 시설지역의 출입문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③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출입문과 화물청사로 연결되는 출입문은 보안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21조(보안 지원 시설)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공항보안감독관 등의 사무실 공간을 여객청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 공간은 행정 사무실과 전화, 무선통신기, 기타 필요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공항보안감독관 등의 사무실을 주차장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토록 한다.

③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 요원이 외곽 초소에서 근무할 경우 여러 자연 현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④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폭발물탐지반의 지원을 받는 공항의 경우 업무 수행에서 탐지반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공항 비상운영센터)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공항설계시 가능한 한 공항비상운영센터(이하 “비상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비상운영센터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지휘, 통제지점의 중앙에 위치하며, 항공기 피랍, 인질대치 사항 또는 항공기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시 공항 위기 관리팀을 지원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운영센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동 본부의 업무를 수행할 곳을 지정한다.

④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비상운영센터 위치 선정시 다음 각 목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통신 능력, 편리성, 보안, 설치시설, 접근용이성
2. 이전이 필요할 경우 대체 예정 위치
3. 접근 통제를 할 수 있고, 외부의 지원 요원 및 장비의 접근이 가능한 곳
4. 위기관리팀이 불필요하게 방해받지 않는 곳
5. 이동지역 관찰이 가능하고, 폐쇄회로 TV 사용하기 용이한 곳

⑤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비상운영센터에 주요 결정권자 및 협상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⑥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비상운영센터 설계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고려 한다.

1. 무중단 전원 공급
2. 비상운영센터로 인원 및 장비 운송이 가능토록 차량 접근 허용

3. 지원차량 및 운영 요원용 주차시설 확보

4. 방음시설

제23조(보안운영센터)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가 보안운영센터를 설계할 경우 비상운영센터와 불법방해행위 진압 부서 본부 인근에 위치토록 설계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공항보안시스템에 장치된 감지 장치에서 경보가 발생할 경우 보안운영센터에 통보토록 한다.

③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운영센터에 다중 콘솔 비디오 디스플레이, 모니터, 통제장치, 통신망(전화, 인터콤, 무선통신장비) 등이 설치되도록 한다.

④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운영센터에 보안 지역 정의, 감지장비의 사양, 공항배치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적 등을 구비한다.

⑤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운영센터에 다음 각 호의 통신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

1. 공공 안내 방송 및 호출 시스템
2. 공항 경찰 및 보안 관련 사무실
3. 화재경보 감시
4. 일반지역 및 터미널 운영센터
5. 화물 등 접수소
6. 출입증 발급소
7. 유지보수 부서
8. 비상운영센터
9. 비행정보실
10. 관제탑, 항공사, 공항의무실과의 직통 전화
11.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자동 비상 연락 가동 시스템
12. 언론 기자 회견실(상업 방송테이프를 볼 수 있는 시설 포함)

제24조(귀빈실) 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귀빈실을 설계할 경우 보안통제가 용이한 지역에 위치토록 하며, 이동지역이나, 기타 보호구역으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토록 한다.

제25조(관제탑, 변전소, 연료저장소 등 주요 시설)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주요시설의 출입문은 출입통제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②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주요시설로 통하는 창문은 보강철이나 고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주요시설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전화통신실 및 장비실에 대한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⑤공항운영자는 경비가 없는 주요 시설은 불규칙적으로 순찰하여야 하며 창문 및 출입구에 침입자 감지시스템을 설치한다.

⑥공항건설 또는 운영자가 여객 청사 설계에 유리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가능한 한 용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⑦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보안조치가 필요한 구역에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제26조(전원) 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해될 경우 보안 및 비상 출입구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항공안전보안장비 인근에 고압 전력이 흐르는 경우 장비 앞에 전류조정기를 설치하고, 항공안전보안장비와 보안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는 습도 및 온도조절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한다.

제27조(보안등) 공항 등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입자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경비요원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2. 침입자로부터 경비요원을 은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침입자 저지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안등 인근에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경우 보안요원에게 깨끗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 밝기가 있어야 한다.

제28조(폐쇄회로 TV) ①공항건설 또는 운영자는 외곽울타리 경보 감시, 장비 감시 또는 출입구역 감시와 같은 특정지점 정밀감시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폐쇄회로 TV의 비디오테이프 녹화는 한 reel당 300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디오테이프는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재 사용할 수 없으며, 디지털 녹화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녹화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항건설 및 유지·보수 관한 보안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건설, 유지·보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